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군인에 대해 「대한민국헌법」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34조).
-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(안 제41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